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253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이인영・이기헌・박홍배

박상혁 · 김용만 · 한정애

이정문 · 강준현 · 전진숙

김영진 • 백승아 • 이연희

김성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때도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용자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하여 이용자를 환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관련하여 현행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 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2항·제3항 신설, 제2조의6).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위 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을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 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 한다.

-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행위 발생시 즉시 하여야 한다.
- 1.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는 경우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자동음성안내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 시·청각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인지 가능한방법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6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고객에게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송금·출 금하려는 경우
- 1. 그 계좌의 개설 거절
- 2. 기존 계좌의 해지
- 3. 자금의 이체·송금·출금 거절
- 1.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 2. 자금의 이체·송금·출금 거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생 략)	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행위 발생 시 즉시 하
	<u>여야 한다.</u>
	1.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
	<u>는 경우</u>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u>하는 경우</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자동음성안내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 제4조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인지 가능한 방법으

로 경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저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기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한다.

1.·2. (생략) <u><신 설></u>

<u>3.</u> (생 략)

- ② (생 략)
-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

0 11121
<u>④</u> 제1항을 위반하
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경고
를 하지 않음
세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하고 고객에게 제2조의4제3항
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고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송
금·출금하려는 경우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 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 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u>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u> 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 다.

 <신</th>
 설>

 <신</th>
 설>

 <신</th>
 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할
1. 그 계좌의 개설 거절
2. 기존 계좌의 해지
3. 자금의 이체·송금·출금 거
<u>절</u>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할
1.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
도 제한
2. 자금의 이체·송금·출금 거
<u>절</u>